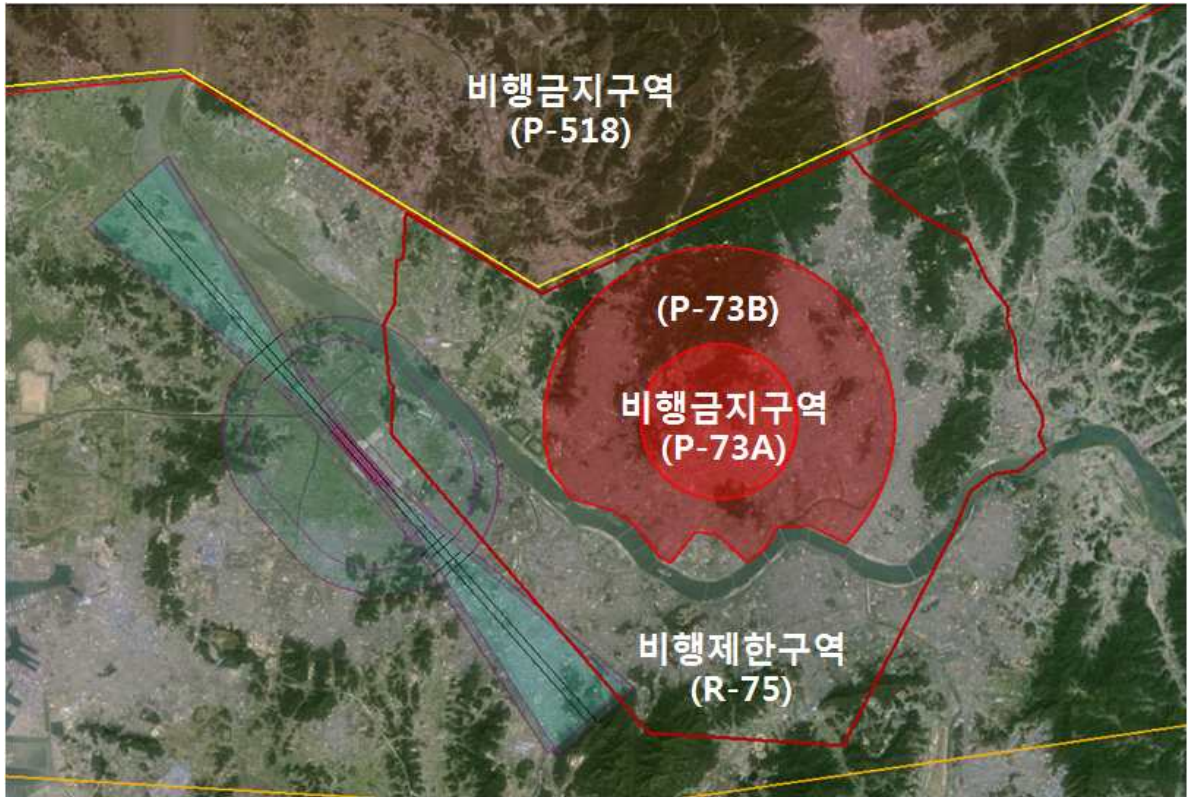


# 참고 1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

□ 비행금지구역(적색 표시구역) : 휴전선 일대(P-518), 서울도심(P-73)



※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



Q 1. '무인기'는 잘못된 표현이다?

A 1. Yes (O)

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. 「항공법」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'무인비행장치'로, 150kg 초과 시에는 '무인항공기'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.

Q 2.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?

A 2. No (X)

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.

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
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,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([www.onestop.go.kr](http://www.onestop.go.kr))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.

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 3.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?

A 3. No (X)

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.

**Q 4.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?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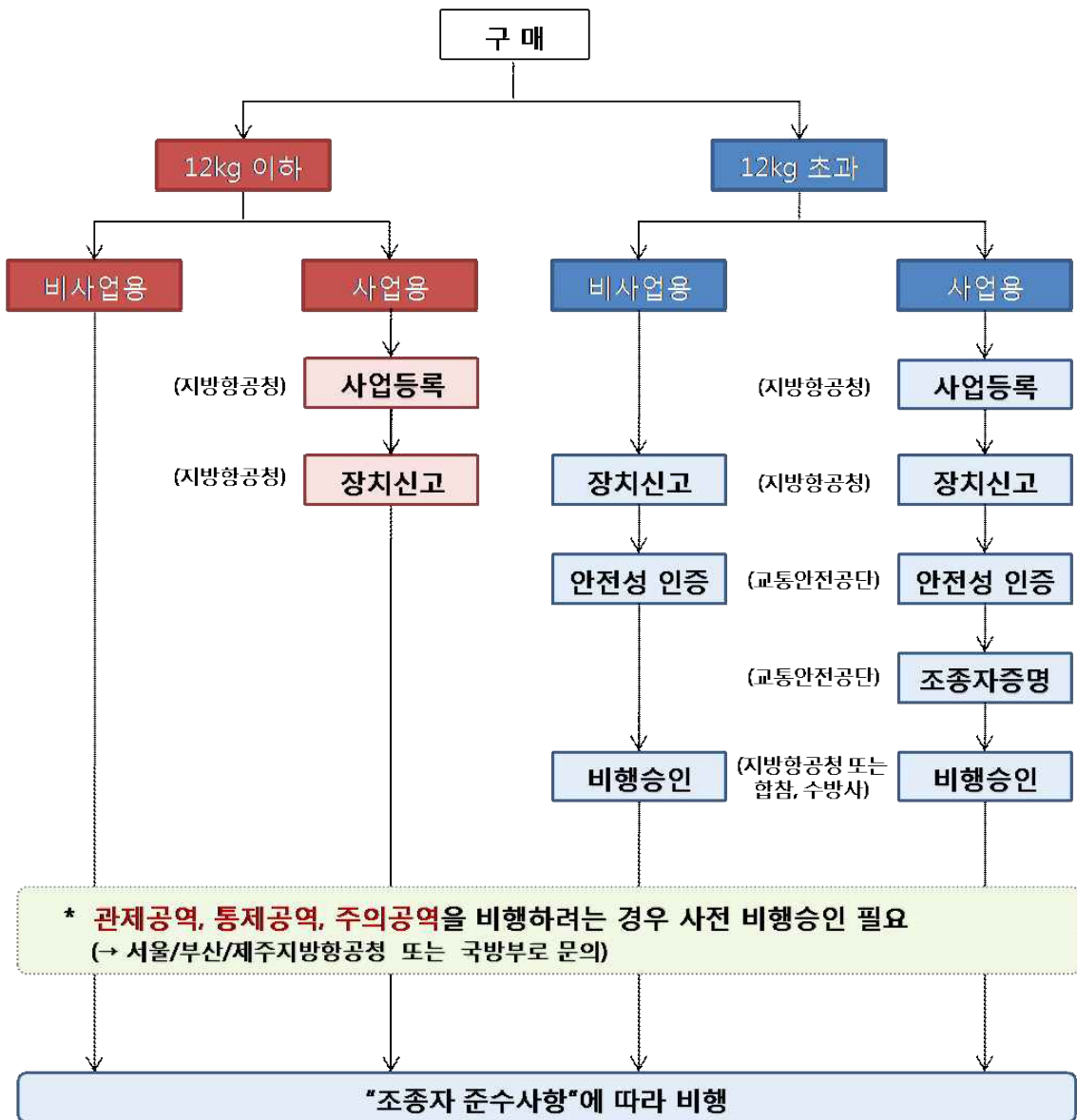
**A 4. Yes (O)**

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“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”으로 구분하고,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, 사진촬영, 육상·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, 산림·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, 인력,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
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,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Q 5.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.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?**



※ 추가문의

-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2147)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51-974-2145)
- 안전성인증 :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(054-459-7394)
- 조종자증명 :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(054-459-7414)
- 비행승인 :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(032-740-2353)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(051-974-2153)
- 공역관련 :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(092-740-2185),  
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(051-974-2206)
- 국방부 : 콜센터 1577-9090, 대표전화(교환실) 02-748-1111,  
수도방위사령부(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) 02-524-3413, 3419



□ **사업 정의** (근거 : 항공법 제2조제44호,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)

○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**무인비행장치\***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,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

\* 무인(無人)비행장치 :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

-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: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
- ② 무인비행선 :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

**<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>**

- 가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
- 나. 사진촬영,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
- 다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
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□ **사업등록 기준** (근거 :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)

| 구 분     | 기 준   |
|---------|---|
| 1. 자본금  | 가. 법인: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<br>나. 개인: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조종자  | 1명 이상   |
| 3. 장치   |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 |
| 4. 보험가입 |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, 계류식 기구는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|

비고:

- 가.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.
- 나.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**처리기관**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항공청

※ (기타사항)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 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령” 참조

**참고 4**

**「항공법」 상 조종자 준수사항 원문**

| 항공법   | 시행령   | 시행규칙   |
|---|---|--|
| <p>제23조(초경량비행장치 등)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4조(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·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</li> <li>2. 계류식(繫留式) 기류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</li> <li>3. 낙하산류</li> <li>4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</li> <li>5.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(無人回轉翼)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</li> <li>6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</li> <li>7. 연구기관 등이 시험·조사·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</li> <li>8.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</li> </ol> | <p>제68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)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</li> <li>2.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</li> <li>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·통제공역·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</li> <li>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(無人回轉翼)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</li> </ol> </li> </ol> </li> </ol> |

|  |  |   |
|--|--|---|
|  |  | <p>하인 것</p> <p>2)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</p> <p>4.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</p> <p>5.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</p> <p>6.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. 다만,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(150미터)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7. 「주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(이하 "주류등"이라 한다)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</p> <p>8.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</p> <p>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</p> |
|--|--|---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<p>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.</p>   |
| <p>제141조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)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,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2.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/ol> |  | <p>제16조의3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)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개정 2013.3.23., 2014.7.15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인비행장치: 다음 각 목의 사업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</li> <li>나. 사진촬영,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</li> <li>다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</li> <li>라. 조종교육</li> <li>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/li> <li>2. 삭제</li> </ol> <p>제313조(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 등)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3의3과 같다.</p> |